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운정재가방문요양센터

운정재가방문요양센터는 노인 및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기관과 대상자의 협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 • •

제 1조 (계약기간)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대상자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 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 계약기간 종료에 따라 재계약을 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로 결정할 수 있다.

제 2조 (계약목적)

지역사회의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노인, 치매 등)에게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다양한 재가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상자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목표의 달성을 위해 성실히 요양서비스를 이행하여 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제 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본 기관은 급여 서비스로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 이외 급여로 한다. 이러한 경우,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 즉 실비로 하며 이용계약 또는 체결한다.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당해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인 경우, 감경 절차 및 감경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자는 0%, 차상위 계층 및 의료급여자 6%, 9%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지자체 결정 사항에 따른다.

제 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 기관의 방문상담 및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운정재가방문요양센터

운정재가방문요양센터는 노인 및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기관과 대상자의 협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

제 5조 (계약해지)

계약해지는 대상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4.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7.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8.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대상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대상자(보호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운정재가방문요양센터는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이행하며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고 계약 당사자 간 권리와 의무를 다한다.

2024 년 1 월 1 일

운정재가방문요양센터
센터장 김현순



*기관운영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은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4년 방문요양·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급여비용의 범위

혜택 구분 중 감경대상자 또는 기초생활 수급자는 가족구성원의 소득 기준으로 결정되며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명시됩니다.

혜택구분	공단부담금	개인부담금(월)	
일반	85%	15%	100%
감경	94% / 91%	6% / 9%	100%
기초	100%	0%	100%

등급별 월 한도액(원)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한도액 (원)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 비용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이용료는 후납으로 하며 통장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기요양인정 등급 외자의 경우 선납으로 한다.

※ 대상자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 직원이 직접 수령하며 받은 즉시 기관계좌입금 후 담당 직
원의 내방 혹은 메신저/메일/우편 발송을 통해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을 발부한다.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제공시간	30분 이상	60분 이상	90분 이상	120분 이상	150분 이상	180분 이상	210분 이상	240분 이상
수가(원)	16,630	24,120	32,510	41,380	48,250	54,320	60,530	66,770

목욕 차량미이용	60분 이상	40분 이상 ~ 60분 미만
수가(원)	47,670	38,140

※ 단,평일 심야(오후10시 이후 익일 오전06시 이전) 및 일요일 30% 가산, 관공서의 휴일 규정에 의한 공휴
일은 표준수가의 50%를 가산한다.